



해외 경쟁정책 동향

미국

FTC, 연방기록부 발간 승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타이어 광고 및 표시 가이드라인, 광고시 보증 및 추천에 관한 가이드라인, 공정신용 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하에서의 일반정책 및 해석에 관한 성명서 등에 관한 2003년 규제검토 내용을 담고 있는 연방기록부의 발간을 승인했다. 이 기록부에 있는 각종 규칙, 가이드라인 및 성명서들은 FTC가 지속적으로 행하는 체계적인 규제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절차의 일환으로 FTC는 해당 규칙, 가이드라인 및 정책 성명서 등에 대해 코멘트나 경제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거나 또는 관련기관에 요구할 것이다. 특히 이들과 주, 지역 및 연방법 사이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며, 기술적·경제적 및 다른 산업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도 검토한다.

2003. 1. 7. 연방거래위원회

MS, 캘리포니아 집단소송에서 합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지난 1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독점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거액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MS는 이번 소송 참가자들에게 PC 소프트웨어 등을 구입할 수 있는 1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5달러에서 29달러 상당의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1999년 처음 제기된 이번 소송은 4년여간의 법정다툼 끝에 합의안을 도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지난 1995년 2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MS 윈도 스프레드시트 워드프로 세싱 소프트웨어 등 MS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캘리포니아 지역의 소비자들이 혜택을 얻게 된다. 양측 변호인들은 1,300만명의 소비자, 4,700개 학교의 300만명 학생들이 이번 합의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령 400대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총 2만 5천 달러의 상품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원고측 변호를 맡고 있는 Townsend and Townsend 법률회사의 Richard Grossman 변호사는

밝혔다.

1999년 2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MS사가 윈도우 95와 98 소프트웨어에 대해 40달러씩 비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법인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여 발생되었다. MS사는 데스크탑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였고, 1999년 11월 연방법원에서는 MS사가 연방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캘리포니아 회사들과 소비자들은 상품가격의 30%를 되돌려 받는 환급조치가 행해지게 되었다고 원고측 변호사인 Grossman 씨는 말했다.

이번 합의안은 앞으로 소송 참가 고객과 MS 반독점건을 총괄하고 있는 주 법원 판사의 최종 승인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이 합의안은 오는 2월 24일 캘리포니아 최고법원의 Paul Alvarado 법관의 승인 여부에 관한 판결에 의해 결정된다.

캘리포니아주 고객들은 최종 승인이 떨어진 뒤 4개월 이내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자세한 보상방식은 판사가 최종 승인한 뒤 공식발표 할 예정이라고 MS측은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4년 기한의 상품권을 받게

될 캘리포니아주 고객들은 이를 이용해 MS 운용체제로 구동되는 어떤 제품이나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MS 측의 Brad Smith 변호인이 설명하면서, 독점금지소송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원고측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비용은 법원에서 판결로서 정해지게 되며, 이 비용 역시 MS측에서 부담하게 된다.

2003. 1. 10. CNet.com News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 직무대행 체제로

연방법무부 독점금지국장이었던 John Ashcroft는 지난 2002년 11월 15일에 대통령이 R. Hewitt Pate를 독점금지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의 임기는 지난 11월 23일부터 시작되었다. 독점금지국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기 전에, 그는 2001년 6월 3일부터 독점금지부국장으로 재직해 왔다. 부국장 시절 그는 항공, 운송, 에너지 및 규제 이슈들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어왔다. 독점금지국에 재직하기 이전에는 Hunton & Williams라는 법률회사의 독점금지팀에서 반독점, 특허, 상표, 허위광고 및 기타 기업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일을 하는 파트너로서 일했다.

Pate씨는 1984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버지니아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

고 1987년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는 제4항소법원 판사인 Harvie Wilkinson III(1987-1988), 대법원 판사인 Anthony Kennedy(1989-1990), 전 대법원판사인 Lewis F. Powell, Jr.(1988-1989)을 도와 일한 경험이 있다. 그는 버지니아주 변호사협회 회원이며, 독점금지 파트의 책임을 맡기도 했다.

또한 그는 실무 외에도 반독점 문제 및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한 기고문도 있으며, 버지니아 대학교 초빙교수로서 지적재산권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강의하기도 했다.

2002. 12. 20. 연방법무부

독일

연방카르텔청, 폐기물처리 회사에 대한 기업결합 금지

연방카르텔청은 Karl Nehlsen GmbH & Co. KG(이하 Nehlsen), Rethmann Entsorgungswirtschaft GmbH & Co. KG(이하 Rethmann) 및 swb AG(이하 swb)가 주식취득의 형태로 Bremerhaven Entsorgungsgesellschaft GmbH(이하 BEG)를 공동으로 통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 기업결합은 가정용 쓰레기 시장(특히 소각 시장), 상업용 폐기물 소각 및 브레멘과 니더작센 지역에서의 가정용 쓰레기의 운송

및 수집에서 있어서 시장지배적지위를 형성시킨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업결합은 경쟁제한방지법 제1조에 의해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Ulf Böge 연방카르텔청장은 “그 지역의 선도적인 폐기물 처리회사인 Nehlsen, 국내의 유력한 폐기물 처리회사인 Rethmann이 BEG에 공동참여 하는 것은 경쟁법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Nehlsen, Rethmann 및 swb가 BEG에 공동참여 하는 경우, 이들은 브레멘과 니더작센 지방의 가정용 및 상업용 폐기물 소각시장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획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강력한 경쟁자인 E.ON 사는 에너지 공급이 주력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잠재적인 경쟁이 유지될 수 없다. 또한 Rethmann이 이 기업결합에 참여함으로써 몇몇 잠재적 경쟁자들은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연방카르텔청은 판단했다. 따라서 연방카르텔청은 이 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정용 쓰레기의 수집과 운송 시장에서 Nehlsen과 swb는 이미 이번 기업결합 이전부터 이 지역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기업결합의 결과로 이들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모두 60%를 넘게 되는 반면, 2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10%를 겨우 상회하게 된다. 따라서 이번 기업결합은 이미 존재하는 공동의 지배적지위를 더



육 강화시킬 것으로 판단했다.

2002. 12. 23.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지난해 성과에 만족

연방카르텔청장은 “지난 2002년 우리 카르텔청은 경쟁을 보호하기 위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신고된 기업결합의 허가 건수는 이전 해보다 적었지만, 제한된 인적 자원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카르텔을 적발한 건수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2002년 연방카르텔청은 170여개의 사업자들의 카르텔에 대해 위법성 심사를 했다. 그 중에서 특히 레미콘 (ready-mixed concrete) 분야와 같은 시멘트 산업, 제지 도매업 및 보험업에 대한 조사가 관심을 끌었다. 어떤 경우에는 2000년에 도입된 완화 프로그램 (leniency programme)이 성공적으로 적용되기도 하였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과 관련해서는 연방대법원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판결한 바 있는 루프트한자의 약탈적 가격설정 행위와 월마트의 원가이하의 판매 사건이 있었다. 경쟁의 원칙은 이와 같은 주요한 사건들 이외에도, 독일 철도 (Deutsche Bahn)와 유통업체인 Karstadt의 소규모 공급자들에 대한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집행되었다. 이들을 포함하여 모두 98건의 사건이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전 해의 2배에 이르는 조사 실적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02년에는 네트워크에 기반

한 에너지 분야의 자유화가 다시금 주요한 문제로 떠오른 해였다. 연방카르텔청은 전기망을 보유한 10개의 사업 자들에 대해 이들이 망이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한데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혐의를 잡고 조사를 개시하였다. 이들 중 Stadtwerke Mainz와 Thuringer Energie AG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데 그쳤으며, 나머지 사업 자들에 대해서는 과다비용청구와 관련하여 조사를 벌였다.

또한 2002년에는 다른 경쟁당국과의 공조를 더욱 확고히 하는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유럽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유럽경쟁당국들과의 협력이 증진된 한 해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각종 작업반의 설립을 통해 국제적인 경쟁당국간의 네트워크가 보다 구체화되었다.

2003년에는 연방카르텔청은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중에는 유럽 경쟁법의 새로운 절차 규정의 시행과 EU 기업결합규제의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네트워크에 기반한 에너지 산업의 자유화는 작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산업법을 통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조치 집행과 가스시장에 대해서도 조사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욱이 2003년에는 주요한 카르텔 사건들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성 카르텔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03년 5월에는 제11회 국제 경쟁 컨퍼런스를 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02. 12. 19. 연방카르텔청

연방카르텔청, 과다한 망이용료를 요구한 사업자에 대해 경고

연방카르텔청은 독일 E.ON 그룹의 계열사인 Thuringer Energie AG(이하 TEAG)에 대해 과다한 망이용료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다. 연방 카르텔청은 2002년 1월 초반부터 과다한 망이용료 요구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데, 이는 이 조사에서 두 번째 내려지는 경고조치이다.

연방카르텔청장의 말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목적은 전기시장에서 유효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현재의 과다한 망이용료를 인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TEAG의 망이용료 산정을 위한 비용계산을 위한 조사는 지난 2001년 4월의 작업반 보고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따르면 TEAG는 망이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는 혐의가 인정된다.

이 비용산정 검토에서는 TEAG가 망과는 상관없는 비용까지도 망이용료에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비용에 산입된 몇 개 항목은 현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TEAG의 망이용료에 반영된 비용 중 일부가 감소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산정된 망이용료도 인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2. 12. 16. 연방카르텔청

EU

EU 집행위원회, 현대-다임러 트럭 합작사 승인

세계 최대의 트럭 제조사인 다임러 크라이슬러는 유럽연합으로부터 현대 자동차와의 트럭 합작회사 설립 승인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반독점 검토작업을 통해 현대차와 다임러의 합작법인 설립 승인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제3자의 반대의견이 없는 한 1개월 뒤에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2002. 12. 19. EU위원회

일본

전기통신분야의 제도개혁 및 바람직한 경쟁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도입

전기통신시장에서는 IP화(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등에 의해 다양한 서비스가 보다 저렴하게 제공되는 등 경쟁이 크게 진전되고 있다.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은 NTT가 전기통신사업을 독점하고, 전화서비스가 주였던 시대에 제정된 것이지만 ADSL(비대칭 디지털 가입자회선),

FTTH(가정용 광화이버), 케이블인터넷 등의 서비스가 확대되고, 더욱이 IP 전화, 무선LAN(네트워크의 단말부분에 무선 등을 이용한 통신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가 차례로 나타나고, 시장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실태에 맞지 않게 됨에 따라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이 한층 활발히 행해지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관점에 근거하여 재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규제등과경쟁정책에관한연구회」에서는 이러한 현상의 인식으로 2002년 9월 이후 전기통신분야의 제도개혁 및 경쟁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관한 검토를 하였다.

2002년 11월 전기통신분야의 제도개혁 및 경쟁정책에 있어서의 보고서가 정리되어 공표되었으므로 그 개요를 소개한다.

1. 기본적 견해

(1) 제도 재검토의 필요성 및 기본적 인 시점

가. 경쟁이 한층 촉진됨으로 기술혁신과 사업자에 의한 창의력의 발휘를 촉구하는 것이 전기통신시장의 건전한 발달과 국민의 편리 확보에도 연결된다.

나. 기술변화가 심한 본 분야에 있어서 사전규제는 도가 지나치게 되거나 실태의 뒤를 따르기 쉽다. 이 때문에 인·허가 등의 사전규제의 방법이 아닌 사전에 금지행위를 명시해 두어 문제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사후적인 방법을 기본으로 한다.

(2) 경쟁당국과의 정합성의 확보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규제에 있어서 이중적용에 의한 혼란을 피하고,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또한 분야마다 경쟁규칙이 다르지 않으므로 공정취인위원회와 사업소관 관청이 협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규제의 방향

가. 가입자회선망과 같은 bottle-neck 설비의 개방화를 위한 규제는 과도적인 경쟁도입을 위한 규제로서 필요하다. 단, 시장에 있어서 경쟁의 촉진에 대하여 사업소관 관청과 공정취인위원회가 공동으로 검증하고 규제내용을 재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나. 소위 유니버설 서비스에 관한 규제 등에 대해서도 그 대상이나 내용 등에 있어서 경쟁으로의 영향의 관점에서 공정취인위원회가 관여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 이러한 사전규제 이외는 일반 재화 서비스와 동일하게 사전규제를 폐지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활동의 여지를 넓히는 사후규제를 기본으로 한다.

2. 독점금지법에 의한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환경의 정비

(1) 공정취인위원회의 심사체제 강화 및 신속한 대응

사전규제를 필요최소한으로 하고 사후규제를 기본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정취인위원회의 현행의 대응으로는 아



직 불충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도 많기 때문에 심사체제의 확충, 전문성 향상 등에 의해 사안을 한층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2) 유효한 배제조치의 검토

공정취인위원회는 경쟁회복조치로서 단순한 위반행위의 배제에 그치지 않고 공정한 접근의 확보, 정보차단, 회계분리 등 종래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검토할만하다.

(3)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의 명확화와 상담체제의 정비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의 명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개별사례에 있어서 신규참입자의 상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와 과거의 위반사례에 관한 설명 등을 함으로써 독점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상담자가 눈앞의 경쟁방해행위의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는 때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독점금지법상의 견해의 지적을 신속하게 행함으로써 상담자의 필요에 맞는 대응을 채택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해야 한다.

3.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제도의 방향

(1) 공정한 경쟁규칙의 확립

가. 지정전기통신설비(bottle-neck 설비 등)를 소유한 사업자에 의한 반경쟁적 행위의 취급

(가) bottle-neck 설비에 대한 일

정의 접속규제는 bottle-neck의 개방화를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차별적 취급 등 독점금지법과의 이중적용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경쟁의 기본 룰인 독점금지법에 위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한다.

(나) 이동체통신에 대해서는 특정의 사업자만이 bottle-neck성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비대칭적인 사전규제의 폐지를 포함한 규제의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의 견해

(가) 관련시장과 더불어 경쟁상황을 평가하고, 유효경쟁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경쟁법에 위임하며, 경쟁이 유효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지정하여 규제를 부과하는 방법은 bottle-neck 규제 이외의 부분에게까지 규제가 확대될 염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나) 이러한 규제방법이 새로운 서비스 분야에까지 확대되면 혁신적인 기술과 경영에 의해 일정의 시장점유율을 획득한 만큼 사전규제의 대상이 되나, 반대로 시장의 활력을 약하게 만든다. 또한 전기통신과 같이 기술혁신이 빠른 분야에서는 시장의 확정이 어렵고, 시장지배력도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기준이 설정될 우려가 있다.

(다) 독점금지법에 의한 사후적인 조치만으로 시장폐쇄효과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는가를 사전에 지정하고, 독점금지법체계에서의 반경쟁적 행위 금지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2) 신규참입의 촉진

가. 기본적인 견해

(가) 1종 및 2종의 사업구분의 폐지에 의해 사업자가 창의력 발휘에 따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는 것을 한층 촉진해 나가야 한다.

(나) 설비의 설치 이외의 기준으로, 예를 들면 사용자 수로 시작해 실질적인 사업구분을 하고 규제를 가하는 것 등은 사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신규참입의 방해가 될 우려가 강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의 대상범위의 명확화

(가)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으로 현행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대상이 인지 어떤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대상범위를 한정·명확화하고,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제시하여야 한다.

(나) 지금까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대상 밖이었던 새로운 서비스 분야로의 규제대상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접속서비스에 대해서도 규제를 부과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다. 참입제한의 완화와 공익사업특권의 원활한 부여

(가) 행정절차가 사전에 사업자의

자격을 심사하지 않고 사업자의 심사를 시장에 위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사전 신고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해야한다.

(나) 도로 등의 소관 관청과 사업소관 관청은 공공사업특권 부여의 공정한 규칙을 책정하고, 객관적이고도 투명한 운용을 하며, 그 내용은 신규참입 촉진적인 것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특권부여의 담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해야한다.

(3) 설비기반의 경쟁촉진과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

가. 설비기반의 경쟁촉진과 상호참입의 촉진

(가) 사용자측에서는 설비기반에서의 경쟁을 촉진하는 타 분야 기업의 참입은 환영할만한 것이며, 분야 횡단적인 사업전개에 있어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보는 사업소관 관청의 종적 규제가 아니라 일반법인 독점금지법에 근거한 규칙으로 대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나) 공익사업 분야의 기업 참입시 사업규제의 필요성이 명확치 않은 채 특정의 사업자에게만 사전참입 조건을 부여하면 참입의 의욕을 방해하여 경쟁상의 폐해가 크다.

나. 상호참입 관련 공정경쟁의 확보

예를 들면, 전력회사의 참입시 반경쟁적행위(전주·관로의 이용, 정보의 유용, 내부보조, 전력요금의 할

인 등에 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에 따라 엄정·신속하게 대처함과 더불어, 법 운용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4) 요금면에서의 공정하고도 자유로운 경쟁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촉진

상대요금을 포함한 자유로운 요금설정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정비가 필요하고, 유니버설서비스에 관한 규제를 없애며, 요금·서비스 규제는 폐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요금변경명령 등에 대해서는 경쟁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함과 아울러 보고의무가 사업자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5) bottle-neck 설비의 개방에 따른 서비스 경쟁의 촉진

가. 기본적 견해

(가) 서비스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볼 때 bottle-neck 설비의 개방화는 중요하다. 또한 접속요금규제에 대해서도 한층 투명성이 높은 방식을 이용하는 것과 더불어 서비스간의 경쟁을 한층 촉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나) 접속요금을 포함한 접속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는 설비기반에서의 신규참입 촉진과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도 있고, 사업소관 관청과 공정취인위원회가 공동으로 당해 규제의 방향을 검토해 나가야 한다.

나. 전기통신사업분쟁처리위원회와 공

정취인위원회와의 정합성의 확보

이중기준이나 사업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양 조직간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행해진다거나 일정 조건하에 상호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연휴(連携)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새로운 서비스 제공의 촉진

인증·과금결제나 콘텐츠 배부 등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에 사전규제를 가하는 것은 사업전개의 의욕을 꺾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고, 예를 들면 bottle-neck성을 배경으로 한 네트워크 등의 이용에 관한 반경쟁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에 의한 대응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7) 이용자 이익의 확보

가.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부터의 퇴출에 관한 제한

퇴출에 관한 사전규제는 오히려 사업자의 참입의욕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ISP를 포함한 퇴출에 관한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하겠다.

나. 행정·사업자단체에 의한 소비자보호책의 강화

(가)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도 다른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에 의한 정보제공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가 주체적·합리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원칙적으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나) 기술진보가 빠른 분야에서는



정보개시의 내용 등에 있어서 행정 이 과도한 의무부과를 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사업자단체에 의한 정보개시 지침의 책정에 대해서는 독점금지법 위반행위를 유발할 염려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8) 그 밖의 경쟁에 관한 논점

가. 유니버설서비스의 확보와 경쟁촉진

유니버설서비스 확보를 위한 시책은 경쟁을 보완하는 형태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동 시책은 경쟁에 대해 중립적인 것으로 합과 동시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 그 대상을 재검토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 기술기준에 관한 부담의 경감

기술기준에 관한 의무에 대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촉진을 위해 현행 수준에서 완화해야 한다. 특히 현재 규제를 부과 받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활동을 통해서 신규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다. NTT그룹 각사간의 경쟁의 촉진

NTT그룹 각사의 사업활동을 자유롭게 합과 동시에 경쟁을 한층 촉진하는 관점에서는 NTT 토코모로의 출자비율을 인하함과 더불어 NTT 그룹 각사에 의한 경쟁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라. 공정한 경쟁규칙의 책정·집행

접속 등의 사전규제규칙의 책정·집행 등에 관해서는 사업소관 관청은 공정취인위원회와의 협동을 도모

해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분쟁 처리위원회의 공정성·중립성을 한층 철저히 하는 등 보다 중립적인 행정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마무리

본 보고서의 제언에 따라 관련 각 분야의 활발한 논의 및 규제 재검토 등이 행해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본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공정취인위원회라 할지라도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 대처체제의 충실을 계획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후에도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해 시장 상황이 항상 변화해 갈 것이 예상되는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는 독점금지법에 의한 사후규제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되어 동 분야에 있어서 공정취인위원회의 역할의 중요성도 증가해 갈 것으로 본다. 공정취인위원회의 대처체제의 새로운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업소관 관청과의 연휴 및 인원의 교류 등을 통해 다양한 지식 및 경험을 축적해 전문성을 높여 가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공정취인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제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의 대처에 대해서 검토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문 중 의견에 미치는 부분은 필자의 개인적 견해임)

「월간 공정취인」 2002. 12월호 中

학교 이과교재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권고 등에 대해

공정취인위원회가 학교 이과교재의 제조판매업자에 대해 독점금지법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학교 이과교재의 제조판매업자 8개사(이하 '8개사'라 함)가 공동으로 서일본 지역(쿠슈 및 오키나와현을 제외한 토야마현, 기후현 및 아이치현으로써 서부 지역)의 지방공공단체 등이 발주한 학교 이과교재의 거래에 있어서 특정 제조판매업자명, 카다로그의 제품번호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납품할 것 등을 결정하고, 실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반하여 당해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1월 29일 8개사 중 5개사에 대해 동 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서, 동 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를 행했다.

8개사 중 본 위원회의 본 건 심사개시 전에 상기 위반행위를 그만둔 2개사에 대해 향후 상기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2) 또한 8개사는 공동으로 동일본 지역(호카이도를 제외한 니가타현, 나가노현 및 시즈오카현으로써 동부 지역)의 지방공공단체 등이 발주한 학교 이과교재의 거래에 있어서 특정의 제조판매업자명, 카다로그의 제품번호 등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납품할 것 등의 합의에 따라 이를

실시한 행위가 인정되었으므로 11월 29일, 7개사에 대해 동 법 제3조(부당한 거래제한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또한 8개사 중 권고 등의 조치를 받지 않은 1개사는 동경지방재판소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2002. 11. 29. 공정취인위원회
(『월간 공정취인』 2002. 12월호 참조)

공정위, BtoC 전자상거래에 있어 서의 표시 감시상황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종래 소비자 전용전자상거래(이하 BtoC)에 있어서 소비자이익보호, BtoC 거래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물의 개발 등 BtoC 거래에 있어서 거래 적정화에 대한 대응을 해오고 있다.

지난 2002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인터넷상의 광고 표시는 237건이었다. 이 중에서 효능이나 효과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109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하고, 이어서 반품조건 불만 등 거래조건 표시 관련이 57건이며, 판매가격 표시 관련이 46건 등으로 나타났다.

효능·효과 관련 불표시 109건 중에는 식료품 및 보건위생품(미용품, 미용기구 등)이 8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던 식료품 87건 중 61건이 다이어트 식품을 중심으로 한 건강식품이었으며, 보건위생품 51건 중 34건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강조한 표시에 관한 것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단 1시간 안에 허리가 평균 2센티미터 긴장한다”는 표시는 지극히 단시간 안에 효과가 생긴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만한 실증데이터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5월 19일에 행해진 공개집중 실험으로 45명의 모니터 중 42명이 그 자리에서 1회(20분)의 사용으로 다이어트에 성공, 나머지 3명도 2회 짜(30분) 사용에서는 다이어트에 성공해 100%의 성공률 달성!!” 또는 “10대에서 60대까지 여성 500명이 협력해 주셔서 피부 연령 변화를 철저히 체크!! 무려 90% 이상이 6세 이상 회춘한 것으로 측정”과 같은 표시·광고는 상품의 효능·효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효능·효과가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실험결과를 게재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험방법과 판단기준 등의 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표시내용을 증명하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에서 통신속도에 대한 표시는 통신설비의 상황이나 타회선과의 간섭 등으로 인해 속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령 “ADSL 12M의 특징”으로서 최대 속도에 대해 “고속 인터넷, 다운로드가 단연 빠르다”고 표시하고 있으면서도, 회선의 상황이나 경유하는 네트워크 등의 상황에 따라 통신속도가

변동된다는 점은 이러한 표시와 함께 기재하지 않고 링크 된 “Q&A”란에서 설명하고 있었다. 또한 “아날로그 모뎀의 150배” 등으로 강조하여 표시하고 있으면서, 회선의 거리 등에 의해 속도가 저하된다는 점은 하이퍼링크 된 “Q&A”에서 표시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최대 통신속도에 대해 “100Mbps”라고 강조하면서 “best effort”라고만 표시하고 있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동일한 곳에서 설명하지 않고 하이퍼링크 된 “주의”란에서 최대 통신속도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2003. 1. 1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부동산의표시에관한공정경쟁규약」 및 「부동산업에있어서의경품류제공의제한에관한공정경쟁규약」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공정거래협의회 연합회(이하 ‘연합회’)가 신청한 「부동산의표시에관한공정경쟁규약」(이하 ‘표시규약’) 및 「부동산업에있어서의경품류제공의제한에관한공정경쟁규약」(이하 ‘경품규약’)에 대하여, 경쟁표시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이를 승인하고, 그 취지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아울러 표시규약 시행규칙 및 경품규약 시행규칙도 같이 승인했다. 이로써 각 지구 단위로 시행되어 오던 공정경쟁규약은 폐지된다.



전국 9지구의 부동산공정거래협회의는 종래 각 지구별로 공정경쟁규약을 시행해 왔는데, 이 공정경쟁규약을 한층 더 효과적·통일적으로 운용하고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타입의 표시 적정화 등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2002년 11월 1일에 연합회를 창설하였다.

이번 규약 제정은 연합회 설립의 취

지를 근거로 하여 지구 단위의 공정경쟁규약을 폐지하고 연합회의 이름으로 공정경쟁규약을 일관되게 운용하려는 것이다.

이번에 승인된 표시규약과 경품규약은 종래 사용되던 지구 단위의 공정경쟁규약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는 표시규약 및 경품규약의 실시기관으로서 전국 9개 지구의 부동산공정거래협의회와 연

합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연합회의 조직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 둘째로 연합회의 설립 및 공정경쟁규약의 일원화에 수반하여 각 지구의 부동산공정거래협의회와의 관할지구를 일관하여 규정하는 등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했다는 점이다.

2002. 12. 26. 공정거래위원회

본 협회,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매뉴얼) 열람 실시

본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보급을 유도하기 위해 미국, 일본 및 우리 나라 주요 기업의 준수편람(매뉴얼)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으로 미국 GE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에 관한 가이드, 일본 NEC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미국 변호사협회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 매뉴얼(Allied Signal Inc, Amoco, The BFGoodrich, Chevron, Columbia/Health Care, The Dow Chemical, General Electric, General Motors, Hogan & Hortson, IBM, ITT, Mobil, Owens-Illinois, Pfizer, The Quaker Oats, Rohm and Haas, Scientific-Atlanta Inc, TRINOVA, United Technologies, Dupont 등), 그리고 우리 나라 삼성전자, LG전자, 한국통신, 포항종합제철, 동양제철화학, 롯데쇼핑,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과 LG그룹의 공정거래법 업무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회원사에서 열람을 희망하는 경우 필요한 편의를 제공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용 바랍니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작성

본 협회에서는 각 회원사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관련 자율준수편람을 업종에 맞게 작성해 드리고 있으니,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작성 계획이 있으신 각 회원사는 상담 및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 (02)775-8870~2 / FAX (02)775-8873